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0년 9월 3일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0년 9월 3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인력 위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증액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
- 결산검사위원 국내 여비를 현지출장 시 지급, 그 기준을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로 변경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지출장 시 여비 지급 (제10조 제5항 신설)
-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30천원에서 200천원으로 조정(별표 2)
- 현지출장 시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적용(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붙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당과 여비를”을 “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제비용 보상”을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 비용보상”을 “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휴일”을 “공휴일 및 제5항에 따른 출장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출장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위원의 수당·여비 지급 기준

구 분	액 수
수 당	200,000원/1일
여 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의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의원에 준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실제비용 보상) ① 감사위원에게 별표2에 따른 <u>수당과 여비</u>를 검사일수에 따라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u>실제비용 보상</u>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p> <p>③ <u>감사위원에 대한 실제 비용보상</u>은 위촉 기간 중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결산검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u>공휴일</u>을 포함한다.</p> <p><u><신 설></u></p>	<p>제10조(실제비용 보상) ① ----- ----- <u>수당</u> ----- -----.</p> <p>② ----- <u>수당</u>----- ----- -----.</p> <p>③ <u>수당 지급</u>----- ----- -----. ----- ----- -----.</p> <p>④ ----- ----- <u>공휴일 및 제5항에 따른 출장기간</u>-----.</p> <p>⑤ <u>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출장</u> 하는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p>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매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실시

2. 비용 발생 요인

-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수당 및 여비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결산검사위원 선임(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촉기간(20일 이내)
- 결산검사 실시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1	'22	'23	'24	'25	계
계	41,800	41,800	41,800	41,800	41,800	41,800
결산검사위원 수당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경비 당초예산 확보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 영 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41,800	41,800	41,800	41,800	41,800	41,800
결산검사위원 수당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재원 조달	41,800	41,800	41,800	41,800	41,800	41,8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도 비	41,800	41,800	41,800	41,800	41,800	41,80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